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1
----------	-----

2020. 4.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8. 이상애 의원 등 10명

나. 상정의결

-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0. 4. 20.)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상애 의원)

-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의 책무(안 제4조)
-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이하 “법”이라 함)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2)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고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3)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며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였음

-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안 제3조(적용 범위)의 적용범위를 “강남구에서 관할하는”으로 규정한 바 이를 “강남구에 소재하는(또는 주소를 둔)”으로 규정하는 것과의 비교 설명이 요구됨.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한 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범위(또는 자격) 설명도 필요해 보임. 아울러 구에서 관할하는 법인, 시설, 관련 단체 또는 기관 현황 및 종사자 현황 설명도 요구됨
- 안 제4조(책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항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종합계획에 각 호에 포함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각 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실태조사)는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종합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됨. 또한, 법⁴⁾에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간 실태조사 실적 및 반영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8조(처우 개선 등 사업)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각 호별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한(또는 예정) 사업의 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임.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9조(포상)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포상시기, 대상, 포상방법 등 설명이 요구됨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법⁵⁾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⁶⁾’,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의 마련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만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 답 변: 여주 라파엘의 집(2개소), 광림노인전문요양원(1개소), 강남구 추모의 집(1개소) 등 총 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음

○ 질 의: 타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지만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도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강남구에 소재하지 않아도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조례제정현황(2020년 2월 현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 질 의: 현재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원은 몇 명인지
- 답 변: 사회복지시설은 91개소이며, 종사자 인원은 1,453명 정도임

- 질 의: 본 조례안과 관련된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
- 답 변: 현재 인건비 외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개 정도 되는데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조금 월 5,000만원,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금 4,000만원, 종사자 연합연수비 지원금 등 약 7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외에 별도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질 의: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적용대상에 포함 되는 것인지
- 답 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강남구가 관할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모두 적용대상임

- 질 의: 요양원에 근무하는 장기요양보호사들도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 답 변: 장기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
----------	-----

발의연월일 : 2020. 2. 28.

발 의 자 : 이상애·안지연·이재민·
이호귀·김광심·이재진·
이향숙·복진경·김진홍·
김영권(이상10인)

1. 제안이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 며.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펴.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